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ABA-RB, AFA-RA, BBB, CNA-RA, DJA-RA, GAA, GGA-RA, IGK-RB, IGT-RA, KGA-RA
책임 사무실:	Chief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Chief Academic Officer Chief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직원의 이해관계 상충 Employee Conflict of Interest

I. 목적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높은 수준의 윤리지표를 이루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Maryland 윤리법과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정책 BBB, *Ethics* 에 추가되어 MCPS 교직원에게 기대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고 MCPS 교직원이 업무상 이해관계에서의 상충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이해관계의 상충이 생길 경우에 취해야 할 행동에 관한 지침을 세웁니다.

II. 배경

- A. 모든 교직원은 모든 학생, 학부모/후견인, 모든 동료 및 지역 공동체와 정직하고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 B. MCPS 직원은 이 규정과 Board Policy BBB, *Ethics* 그리고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교육위원회 정책에 따라야 하며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MCPS 교직원은 자신의 업무수행 시, 공평하고 독립적 판단을 함으로서 대중의 높은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2. MCPS 자원을 적합하게 사용하여 공공기물에 대한 의무를 수행합니다.

- C. 다음은 이해관계 상충에 해당합니다:
1. 개인의 이익이나 다른 개인 또는 독립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교육구 업무나 사업에 학생, 학부모/후견인/보호자, 고용인 또는 이외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용.
 2. 개인의 이익이나 다른 개인 또는 독립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자신의 직위나 위치, MCPS 자원 및/또는 자신의 교육구에서의 공적 지위를 통해 얻게 된 비공개 또는 사유정보를 사용.
 3. 감사, 연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
- D. 교직원은 상충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염려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행동하기 전에 지침을 구합니다. MCPS 직원 또는 MCPS 고용 후보자는 Policy BBB, *Ethics* 에 명시된 대로 교육위원회 윤리 패널에 권고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 모든 이해관계 상충이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 해석에 질문 또는 지침이 필요한 경우,
1. 교직원은 학교장 또는 수퍼바이저에게 지도를 구합니다.
 2. 학교장 또는 수퍼바이저가 질문이 있을 경우,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OHRD) chief 또는 대리인에게 지도를 구하며 만약 문제가 Board Policy BBB 에 해당하는 Policy BBB, *Ethics* 라면 지정된 절차에 따라 도덕/윤리 담당관(ethics officer)에게 지도를 구합니다.

III. 정의

- A. *직접적인 감독 체인(Supervisory chain)*은 고용인의 매일 활동을 지시 또는 감독할 책임이 있거나 고용인 평가를 하거나 평가를 위해 관찰을 해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육구 리더의 감독 체인에는 보고하는 직원과 감독하는 직원이 포함됩니다.
- B. *MCPS 자료/자원(resources)*은 공공예산으로 구매한 물건으로 MCPS 가 소유하고 운용하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다음과 그 외의 것을

포함합니다: 학교, 차량, 장비와 설비, 물품, 교과과정과 및 비공개 또는 사유정보를 포함한 지적 재산 등.

IV. 직원의 이해관계 상충 예방 지침

A. 수퍼바이저에 대한 기대

1. 감독 또는 리더십 역할의 직원

- a) 감독하거나 지도자적 역할인 MCPS 직원은 자신의 감독 체계 내에서 배우자, 친척¹, 인척 또는 성적 및/또는 연애 관계가 있거나 과거에 성적 및/또는 최근 10 년 내에 연애 관계를 가졌던 직원을 감독할 수 없습니다.
- b) MCPS 직원은 직접적인 감독 아래인 거래처, 계약자로 자신의 배우자, 친척, 인척관계, 성적 및 연애 관계인 사람을 감독할 수 없습니다.
- c) 수퍼바이저는 관리하는 직원과 감독자로서의 이익 또는 수퍼바이저의 배우자, 친척, 인척, 성적 및 연애 관계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혜택, 이익을 위하여 재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 d) 알림의 의무:
 - i) MCPS 수퍼바이저, 행정담당, 지정된 리더는 자신의 배우자, 친척, 인척관계, 성적 및 연애 관계인 사람 또는 10 년 이내에 성적 및 연애 관계였던 사람을 감독해야 할 경우, OHRD 국장(chief)/대리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직속 상관에게 이를 알려야만 합니다.
 - ii) 담당하는 관리 직원이 해당 직원의 감독책임을 다른 수퍼바이저에게 인계하도록 하거나 학교 또는 사무실의 요청에 따라 직원 중 한 명을 재배치하여 감독책임을 이전하도록 합니다.
 - iii) 감독직 또는 리더십 직위 후보자로 선정된 MCPS 직원은 자신이 지난 10 년 동안 성적 및/또는 낭만적인 관계를

¹"친척"에는 동거 파트너 또는 자녀도 포함됩니다.

가졌거나 가졌던 누군가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게 될 경우 OHRD 국장(chief)/대리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개가 IV.A.1.d.ii 에 명시된 대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취할 경우, 이러한 공개로 인해 후보자가 해당 직책에 선정되는 데 반드시 실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B. 학교에서의 직원의 자녀

1. A 자녀의 실제 거주지가 학교 학군 이내이거나 전학 승인(Change of School Assignment-COSA)을 받았거나, 비거주자로서의 재학이 승인되어 학비를 지불 또는 면제된 경우에만 교직원인 부모 또는 친척이 다니는 학교에 재학할 수 있습니다. 요청 승인은 다른 선택사항이 없을 경우, 그리고 수퍼바이저가 이해관계의 상충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 진행됩니다.
2. 고용인의 학생과의 관계와 고용인의 직책에서의 책임 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예상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결정 또는 학생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자녀는 선택사항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학부모/후견인의 또는 친척의 반에 배치되면 안 됩니다. 다른 선택사항이 있을 경우, 자녀를 위한 계획을 고용인과 고용인 수퍼바이저 그리고 학교 행정담당이 함께 개발하게 됩니다.

C. MCPS 사람, 돈, 소유지 또는 다른 MCPS 자원을 사용하여 얻는 개인적 혜택이나 이익

1. MCPS 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지시 하 또는 업무에서 관리 하에 있는 개인, 돈, 소유지, 또는 다른 MCPS 자원을 개인의 혜택이나 이익 또는 다른 개인이나 독립체의 혜택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혜택을 위해 MCPS 의 기물 또는 시설을 임시로 또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MCPS 에 부과되는 비용이 매우 적을 경우
 - b) 사용이 MCPS 직원의 업무 또는 업무 책임이나 다른 직원의 업무에 상충하지 않을 경우

- c) 사용이 다른 교육 정책이나 MCPS 규정과 상충되지 않을 경우
2. MCPS 차량은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의 국장(chief)/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없을 경우, MCPS 업무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기계 및 도구, 클리닝, 페인팅 기계와 도구, 다른 물품을 포함한 소모되는 MCPS 기기는 MCPS 업무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D. 고용

1. 교육구 외에서의 직업/업무일 외의 다른 직업

- a) 일반-모든 이가 전문가로서 업무에 대한 책임을 충족하기 위해 일반 근무 외의 시간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요건이 모든 경우 우선이 됩니다.

교육구 외부에서의 직업은 MCPS 의 근무 의무 시간이 아닌 경우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규정 또는 Board Policy BBB, Ethics,에서 명시한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아야 합니다.

- b) 학교 관련 - MCPS 직원은 학교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가 관련된 활동이 아닌 이상, 학부모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직원이 배정되어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 또는 다닐 것을 예상하는 학생이 다니는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미만의 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보수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에는 드라마, 댄스, 음악 반 또는 공연 등이 포함됩니다.
- c) 학교에 관련 없는 경우 - MCPS 직원은 직원이 배정된 학교에 다니거나 다닐 것을 예상하는 학생이 연관된 직원이 배정된 학교에서의 방과 전과 후의 학교에 관련된 활동이 아닌 활동이 이루어질 때 학부모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활동의 교습에 연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교육감 대리는 MCPS 와 외부 기관이 MCPS 의 교육적 미션을 위해 파트너십 동의를 한 조항에 따라 교직원이 학생을 추천하는 프로그램의 과정에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 사례별로 교습 제공을 고려하여 승인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2. 휴직 중인 직원

월급을 받거나 받지 않고 MCPS 를 휴직 중인 직원은 chief operating officer/대리인의 서면 승인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 휴직 기간에 MCPS 에 고용될 수 없습니다.

3. 개인교습과 여름 캠프

a) 개인교습/튜터링

개인교습은 보수를 받고 추가로 특별히 정기 수업 외에 제공하는 보충 교습입니다. (MCPS Regulation ABA-RB, *School Visitors* 를 봅시다)

- (1) 개인교습은 고용시간 외의 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2) MCPS 직원은 본인이 배정된 학교에 다니거나 다닐 예정인 학생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 (3) 예외는 교육감/교육감 대리의 다음의 경우, 사례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a) 전문 교직원 수가 적은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여름 프로그램의 경우, 학부모/후견인이 여름 동안의 개인교습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의 부교육감/대리인, 특수교육 부교육감/대리인과 학교장이 승인을 하거나,
 - (b) MCPS 와 외부 기관과 MCPS 의 교육적 미션을 돕기 위해 동의한 파트너십 조항에 부합할 경우, 및 학생의 프로그램 추천 절차에 관여하지 않은 교직원의 개인 교습 제공
- (4) 직원은 MCPS 프로그램에서 학생의 입학 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MCPS 가 아닌 기관이나 개인의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 (5) MCPS 소유지에서서의 개인교습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MCPS 직원은 MCPS Regulation KGA-RA, *지역사회의 공립학교 사용(Community Use of Public Schools)*을 충족해야 합니다.

b) 여름 캠프와 학교 시작 전과 후의 학교활동

- (1) 학교가 후원하는 여름 캠프와 학교 시작 전과 후의 활동

직원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가 진행하는 여름 캠프/프로그램/활동 지침(Guidelines for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Conducting Summer Camps/Programs/Activities)과 MCPS 운동경기 핸드북과 Maryland 중고등학교 학교 운동경기 연맹 핸드북(MCPS Athletic Handbook and Maryland Public Secondary Schools Athletic Association Handbook)에 따라야 합니다.

- (2) 학교가 후원하는 여름 캠프와 학교 시작 전과 후의 활동:

- (a) 직원은 경쟁을 통해 선발된 운동이나 경기에 참여하는 팀을 가르치거나 코칭하는 학교에 다니거나 앞으로 다니게 될 학생이 소속된 어떠한 운동 캠프 또는 실력 향상 캠프 또는 방과 전, 후의 활동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 (b) 직원은 학교 장비와 설비 또는 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때, 지역사회 공공시설사용 (Community Use of Public Facilities)을 준수해야 합니다.

- (c) 직원은 학교 장비와 설비 및 물품을 모든 커뮤니티 사람이 공공시설을 사용하도록 승인된 것 이외의 학교 장비, 시설 및 물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E. 자재 개발

직원이 만든 물품, 장비와 설비 또는 자재

1. MCPS 출판물

MCPS 에의 고용에서 온전히 독립적으로 만든 물품, 장비와 설비 또는 자재, 직책에서의 책임과 연결되지 않은 경우, MCPS 의 자원, 시간,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른 물품과 같이 MCPS 가 구매한 경우.

- a) 직원이 만든 물품, 장비와 설비 또는 자재는 **Board Policy BBB, Ethics** 에 책정된 절차에 따라 조달 선택과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 b) 현재 또는 이전 직원이 만든 물건은 이 선택의 요인으로 고려되거나 고려에 반대되지 않습니다.

2.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도록, 직원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 친척, 인척관계 또는 성적 및 연애 관계인 사람에게 개인적인 혜택을 주게 될 어떠한 조달결정, 선발 또는 다른 결정 절차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3. MCPS 소유지

- a) NCPS 의 시간, 공간, 자료, 자원으로 만들어졌거나 직원의 업무의 일부로 만든 MCPS 직원이 혼자 또는 다른 직원과 함께 만든 물품, 장비와 설비 또는 자재는 MCPS 소유입니다.
- b) 활동이 부분적으로 개인 활동이자 공공 활동일 경우, 저작권 비용을 지불하는지에 상관없이 OHRD 국장(chief)/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F. 비공개 또는 사유정보의 사용

1. 자신의 직책을 통해 얻게 된 학생 및/또는 학부모/후견인 정보 리스트를 MCPS Regulation JOA-RA, *학생 기록(Student Records)*과 MCPS Regulation AFA-RA, *연구와 기타 데이터 수집 활동(Research and Other Data Collection Activities i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에서 예외로 지정한 바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다른 사람이나 상업 기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직원은 자신의 MCPS 직책을 통해 얻게 된 공개된 정보가 아닌 정보를 공개하거나 자신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OHRD 국장(chief)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받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V. 위반

이 규정 위반이 의심될 경우는 OHRD 국장(chief)/대리인이 즉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밝혀진 경우, 직원은 Board policies, MCPS regulations 와 MCPS *Employee Code of Conduct* 에 따라 견책, 정직,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관련 자료:

Annotated Code of Maryland, Maryland Public Ethics Law Article, Subtitle 8;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6.03.04.G; MCPS Employee Code of Conduct; Handbook of the Maryland Public Secondary Schools Athletic Association; Guidelines for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Conducting Summer Camps/Programs/Activities

규정변경사: 이전 규정 번호 No 490-1, 1978년 12월 29일(디렉터리 정보 갱신); 갱신 2000년 11월 16일; 갱신 2002년 4월 9일; 갱신 2013년 4월 17일; 갱신 2017년 7월 31일., 2024년 8월 15일 갱신.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혈통,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 지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모두를 위한 평등, 포용, 수용을 만들고 육성하고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체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혐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기호, 상징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암묵적 편향, 부당한 이질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A. 다음은 모든 공공 및 공공 자금 지원 학교와 학교 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Maryland주 정책입니다.

(1) (1) 1964년 연방민권법 제6호(Title VI of the 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4); 및

(2) Title 26, Subtitle 7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Maryland Code에는 공공 및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프로그램은 다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출신국, 혼인상태,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또는 장애에 근거한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차별.

(b) 개인의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 연령, 출신국, 결혼상태, 성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로 예비 학생의 등록 거부, 재학생의 퇴학,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 또는 예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특권 박탈; 또는

(c) 불만의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또는 학교가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징계, 처벌을 발동하거나 기타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연락처 정보와 연방, 주 또는 지방 관련 요건은 버전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문서에 포함된 기술과 참고자료보다 우선됩니다.

최신 정보는 온라인 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www.montgomeryschoolsmdwww.montgomeryschoolsmd

MCPS 학생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Director of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
Section 504 Coordinator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Well-Being and Student Services 850 Hungerford Drive, Room 257, Rockville, MD 20850 240-740-3109 504@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본 통지는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Section 13A.01.07.을 준수합니다.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Agency Equity Officer, Office of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Office of the Deputy State Superintendent of Operations,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2595, oeac.msde@maryland.gov; or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The Wanamaker Building, 100 Penn Square East, Suite 515, Philadelphia, PA 19107,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or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니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니다.